

대전·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. 3. . . .

제안자 : 송은섭 의원

1. 수정이유

- “대전·충청권행정협의회” 규약을 “충청권행정협의회” 규약으로 개정하면서 개정안에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동규약 제명 “대전·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”을
⇒ “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”으로 수정

대전·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대한수정안

대전·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명중 “대전·충청권”을 “충청권”으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대전·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</p> <p>제1조 (목적)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</u>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 안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<u>충청권 행정협의회</u>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</p> <p>제3조 (구성) 협의회는 대전광역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(이하 "<u>충청권 광역자치단체</u>"라 한다)로 구성한다.</p> <p>제9조 (사무처리)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둘 둔다. ②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기획관이 되고, 서기는 광역행정 업무담당 <u>사무관</u>이 된다.</p> <p>제12조 (미 합의 사항 조정요청)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불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<u>행정자치부장관</u>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 (실무협의회) ②실무협의회는 <u>충청권 광역자치단체</u> 기획관리실장과 협의안건 관련 실·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,</p>	<p>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</p> <p>제1조 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3조 (구성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9조 (사무처리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2조 (미 합의 사항 조정요청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4조 (실무협의회) (개정안과 같음)</p>